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단5461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

원고 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이진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논현

담당변호사 조철웅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80,4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20%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8. 31. 접수 제871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원고(개인회생채무자 A)에 대한 채권 1)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가) 2014. 5. 26. 원고의 주식회사 C(합병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채무를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간 2015. 5. 22.(이후 2019. 5. 17.로 연장됨)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나) 2014. 9. 19. 원고의 C은행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대출금 채무를 보증원금 5,490만 원, 보증기한 2024. 5. 22.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가) 2014. 6. 17.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에 기하여 1억 원을 대출받고(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나) 2014. 11. 20.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에 기하여 6,1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3) A은 2018. 10. 2. 이 사건 1, 2차 대출원리금의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C은행은 참가인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8. 27. C은행에 이 사건 제1 대출원리금 86,884,18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비용 949,232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약금 446,890원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참가인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 1) 원고는 2018. 8. 1. 피고와, 원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871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은행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9,36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8675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적극재산으로 1억 5,2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7,756만 원 상당의 채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34,722,270원 상당의 채무, 주식회사 E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 1) 참가인은 2019. 9. 17.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12. 11. 수원지방법원 2019개회2602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2)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나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인권의 성립 여부

-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는바(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그대로 준용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2) 부인대상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약 2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며, 실제로 참가인이 C은행에 이 사건 제1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부인대상행위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가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초부터 2016. 8.경까지 원고에게 1억 원 이상을 대여해 주었는데, 원고가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제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 이상을 대여해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원고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달리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은 71,511,548원 상당이고,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인 2021.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1억 8,25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부동산의 가액은 110,988,452원(= 1억 8,250만 원 - 71,511,548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07,780,455원[= 대위변제금 86,884,189원 + 지연손해금 19,500,144원{86,884,189원 × (2019. 8. 27.부터 2022. 6. 16.까지 2년 + 294일)/365일 × 연 8%} + 위약금 446,890원 + 법적 절차비용 949,232원]이다.

다) 그러므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은 그 중 더 적은 금액인 107,780,455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07,780,4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5층 각 1222.875㎡

지하 1230.075㎡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주차장 667.732㎡

조적조 경사 스라브 2층 관리실 및 노인정

1층 17.798㎡(관리실)

2층 17.798㎡(노인정)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부천시 대 4923.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7.6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923.6분의 42.8316

- 이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판할 -

